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260439 손해배상(국)

원 고 성도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로 275-3(지방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수행자 이원일, 박민제, 이승호

변 론 종 결 2025. 10. 28.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72,207,79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성주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발생

1)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명목으로 1949. 6. 5. 서울 시공관(市公館)에서 '국민보도연맹중앙본부선포대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창설을 선포하였다. 이후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는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여 도 연맹과 시·군 연맹, 읍면지부를 구성하였다.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의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연맹이 결성되었고, 성주군 국민보도연맹은 경상북도연맹의 결성 약 두 달 후 결성되었다. 성주군 국민보도연맹은 지도위원장과 이사장을 경찰서장이 맡고 사찰주임이 지도위원을 맡는 등 사실상 경찰의 지도하에 있었다.

2) 한국전쟁²⁾이 발발한 1950. 6. 25.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도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이라는 비상통첩을 무선전보로 보냈고, 1950. 6. 29. '불순분자 구속의 건', 1950. 6. 30.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하여 국민보도연맹원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하여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했으며, 1950. 7. 11. 치안국장 명의로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1) 조사보고서에는 고령군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성주군이므로 고령군 관련 기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표기한다. 한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생략)의 전투를 '6·25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6·25 전쟁 중'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하도록 하였다.

3) 당시 정부는 1950. 7. 8.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이에 따라 현병사령관이 1950. 7. 12.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공고하였다.³⁾

4)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성주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성주경찰서 및 관할 지서 경찰에 연행 또는 출두 요구를 받는 형식으로 예비검속되어 지서 및 성주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성주경찰서와 국군 제17연대, CIC(미군방첩대) 등에 의해 1950. 7월부터 8월 초까지 성주 지역의 초전면 용봉리 너리골, 벽진면 매수리 수남마을 야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이하 위 국민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집단 살해 사건을 '경북 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과거사정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경북 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⁴⁾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2024. 2. 20. '진실규명대상자 성낙현(成樂賢, 1931년생)은 월항면 지방리(웃모산)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된 후 1950. 7월 말에서 8월 초경 대가면 금산리 땅곡에서 희생되었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진실규명대상자 성낙현을 '망인'이라 한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발송하

3)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4) 아래 성낙현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인은 원고이다.

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등

망인은 사망 당시 기혼 남자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부(父) 망 성갑출(호주, 1960. 10. 20. 사망), 모(母) 망 이월희(1983. 6. 13. 사망), 처 망 도재옥(2015. 8. 9. 사망)과 원고(제적등본 상 1950. 11. 1. 출생⁵⁾)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소속 군과 경찰은 망인과 같은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법령을 위반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함으로써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망인과 그 직계존속인 망 성갑출, 망 이월희, 배우자인 망 도재옥, 자녀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위 각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 본인은 1억 원, 망인의 배우자는 5천만 원, 망인의 부모와 자녀는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망인과 원고의 각 고유 위자료 청구권 및

5) 이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무렵인 '1950. 7. 말 내지 8. 초경' 태아(胎兒)의 지위에 있었다. 다만, 원고의 생년월일에 관하여, 족보(갑 제11호증)에는 '1948. 11. 1.'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의 원고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태어나고서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들어서, 망인의 사망일시가 1948. 11. ~ 12. 경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일시가 '1950. 7. 말 내지 8. 초경'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생년월일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남기는 하더라도, 해방 전후 공부상 기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는 이미 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도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따라서 원고 대리인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주장은 원고의 적법한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상속관계를 반영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2,207,791원⁶⁾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2) 국가배상청구권⁷⁾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1950.경으로부터 위 각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
- 3) 이 사건은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위자료의 산정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4)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는 부당히 과다한 것이므로 유사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6) = 고유 위자료 1천만 원 + 1차 상속분 1억 원(= 망인 위자료 1억 원) + 2차 상속분 5,454,545원(= 망 성갑출 고유 위자료 1천만 원 × 1.5/2.75) + 3차 상속분 6,753,246원(= 망 이월희 고유 위자료 1천만 원 × 1/1.75)

7)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시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청구임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를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점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1)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히 피고 스스로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시도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처벌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막았던 경우도 없지 않고 그 사이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개별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던 사람들도 상당수 사망하였다라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희생자의 시신이나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당시 희생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까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

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적 절차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실심리의 자세이다. 물론 그러한 심리의 과정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측에서 개별 사건의 참고인 등이 한 진술 내용의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고, 그러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민사소송의 심리구조상 피고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이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⁸⁾에 의하여 적법한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살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에는 망인이 희생된 경위에 관하여 '망인은 당시 성주농고 학생회장을 맡는 등 똑똑했고,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좌익 인사들이 일을 시키려고 접근하였으며 거리를 두는 것이 여의치 않아 부산에 거주하는 누나 집으로 피신을 갔다. 그러던 중 망인은 아들인 원고가 태어나자 원고를 보려고 다시 성주로 돌아왔다가 며칠 만에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월희(원고의 할머니이자 망인의 모친)가 경찰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주었지만 결국 망인은 경찰에 의해 총살로 희생되었으며, 마을 동장이 망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가족들에게 인계해 주었다고 들었다. 망인이 연행되는 모습은 도재옥(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모친)이 목격하였고, 원고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도재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 등이 아닌 사람이 망인을 연행하였을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부산으로 피신하였다가 갓 태어난 원고를 보기 위하여 성주에 돌아온 기화로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진술이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임채희(이웃주민) 등의 진술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8)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을 보면, '진실규명대상자 성낙현(成樂賢, 1931년생)은 성주군 월향면 지방리(웃모산)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된 후 1950년 7월 말에서 8월 초경 대가면 금산리 땅곡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해 주체가 정확히 군인인지 경찰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북 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고령·성주경찰서 경찰과 국군 제17연대, CIC 등 국군이 가해 주체이다(갑 제4호증, 72쪽 참조).

(2) 한편 원고의 아들 성기석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기석은 망 도재옥 등 어른들로부터 망인의 사망시기에 관하여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오기 전'이라고 들어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2009년 개인별조사카드에 의하면, 망인의 모친 이월희는 '망인이 1950년 음력 6월 4일 경찰에 연행 당했다. 성주면 좌갑수에게 6만 원을 주면서 무사히 석방시켜 달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50. 7. 30.경 대가면 땅곡에서 망인이 총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처 망 도재옥도 '망인이 성주경찰서로 연행되어 15일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1950. 8.경 느릿고개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원고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에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기 및 사망장소에 관하여 '1948. 11. 내지 12.경', '벽진면 야산'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고 얼마 뒤에 사망했다고 들어서'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성기석 등의 진술과 다소 상반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위 이월희, 모친 도재옥 등으로부터 들은 것인 점, 원고는 1950년생으로서 위 참고인진술 당시(2022. 8. 경) 약 72세의 고령이고, 망인의 사망 시기와 관련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더라도, 제적등본에는 '1950. 9. 14.', 족보에는 '1949. 6. 16.', '제4대 국회보고서'에는 '피살연월일 1950. 6. 16.(음)' 등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희생경위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이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유족들인 망 도재옥, 망 이월희 등의 기억에 기초한 것으로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일부 기록들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 참고인진술조서가 전문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졌다거나 일부 날짜나 장소에 관한 사실관계의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까지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망인의 유족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기록조사·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려진 것으로, 단순히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전문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4)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북 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조직적으로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이 참고인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 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5) 그 밖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인정 근거로 삼은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망인을 살해하여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이상,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

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 소멸시효'라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4)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 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망인이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로부터 위법하게 살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사망 사건'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 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의 적용도 배제되며, 결국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

(3) 망인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2024. 2. 20.에 있었

던 사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4.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24. 6. 25.은 원고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년 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액수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

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망인 및 그 유족들이 경북 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오랜 기간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불법 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망인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한국전쟁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변론종결일⁹⁾을 기준으로 희생자인 망인 본인은 1억 원, 배우자는 5천만 원, 부모와 자녀는 각 1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위자료 계산 내역

가) 고유 위자료

9)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1) 망인 본인: 1억 원

(2) 배우자 망 도재옥: 5천만 원

(3) 부 망 성갑출, 모 망 이월희: 각 1천만 원

(4) 자 원고: 5백만 원

나) 상속관계

(1) 망인의 1950. 7. 말 내지 8. 초경 사망에 따른 위자료 상속

망인 본인의 고유 위자료 1억 원: 호주 아닌 가족인 기혼 남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가 망인의 고유 위자료 1억 원 전액을 단독 상속한다.

(2) 망 성갑출의 1960. 10. 20. 자 사망에 따른 위자료 상속

(가) 부친 망 성갑출의 위자료 1천만 원: 호주가 사망하였으므로, 구 민법(1962. 12. 29. 법률 제1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구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유일한 자(子)인 원고가 망인을 대습하여 호주 상속하고, 처 망 이월희, 장남(망인)의 자(손자)이자 호주상속인 원고, 장녀 성수락(1944. 4. 26. 혼인 분가), 차녀 성순락(1944. 2. 17. 혼인 분가), 성주연(1959. 10. 10. 혼인 분가)이 0.5 : 1.5 : 0.25 : 0.25 : 0.2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망 이월희는 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이므로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 성수락, 성순락, 성주연은 각 혼인하여 동일가격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하므로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 비율로 각 상속하며, 원고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해당하여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나) 구체적으로, 망 이월희 1,818,181원(= 1천만 원 × 0.5/2.75), 원고 5,454,545 원(= 1천만 원 × 1.5/2.75), 성수락, 성순락, 성주연 각 909,090원(= 1천만 원 ×

0.25/2.75)을 각 상속하였다.

(3) 망 이월희의 1983. 6. 13.자 사망에 따른 위자료 상속

(가) 모친 망 이월희의 위자료 11,818,181원(= 망 성갑출 상속분 1,818,181원 + 고유 위자료 1천만 원): 구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2구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인 원고, 장녀 성수락(1944. 4. 26. 혼인 분가), 차녀 성순락(1944. 2. 17. 혼인 분가), 성주연(1959. 10. 10. 혼인 분가)이 1 : 0.25 : 0.25 : 0.2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성수락, 성순락, 성주연은 동일가격 내에 없는 여자로서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 비율로 각 상속한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 6,753,246원[= $(10,000,000 + 1,818,181) \times 1/1.75$], 성수락, 성순락, 성주연 각 1,688,311원[= $(10,000,000 + 1,818,181) \times 0.25/1.75$]을 각 상속하였다.

(4) 망 도재옥의 2015. 8. 9.자 사망에 따른 위자료 상속

배우자 망 도재옥의 위자료 5천만 원: 유일한 직계비속인 원고가 전부 상속하였다.

다) 소결

합계액 : 172,207,791원(= 고유 위자료 1천만 원 + 망인 상속분 1억 원 + 망 성갑출 상속분 5,454,545원+ 망 이월희 상속분 6,753,246원 + 망 도재옥 상속분 5천만 원)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물론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 시의 것을 반영해야만 하는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위와 같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준의 제반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어찌 보면 변론종결 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처럼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통화가치 등의 요인이 변론종결 시에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해 사건과 같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이 개시된 1969. 1. 28.경으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2009. 11. 11.까지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반영하여 증액된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시기와 가까운 때인 1969년 무렵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과잉된 지연배상을 협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 시 이전에는 지연이자를 붙일 수 없는 결과, 위자료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하 '대상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수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앞서 본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5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0. 28.까지 70여 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음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대상 대법원 판결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과거사 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¹⁰⁾.

위 대법원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었던 위 대상 대법원 판결

10) 이러한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민법 규정에 반하여 도출된 것이다.

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결이 선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새로운 법리를 표시한 것일 뿐, 종래 대법원이 표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즉, 이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지 않았다).

(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인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다)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시는 위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예외가 되는 것인데,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대해 또 다른 예외적인 법리를 선언한 것이 된다.

(라) 과거사 사건이라고 하여,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공평의 원칙이 배제될 아무런 상당한 이유가 없다.

(마) 과거사정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하거나 은폐된 진술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과거사정리법 제1조),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19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

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을 진실규명의 범위로 하고 있는데(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 과거사정리법이 2005. 5. 31. 제정되고, 2005. 12. 1. 시행되기 이전까지 국가가 저지른 위 진실규명 범위의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희생자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을 뿐, 소 제기 의사(이행청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과거사정리법 제34조),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데(과거사정리법 제35조), 대상 대법원 판결의 과거사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자의 유족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과거사 사건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면,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채권자는 다른 불법행위 사건의 위자료 채권자에

11) 실제로 위 법리를 처음 설시한 대상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만 상고하였을 뿐, 원고는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

비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수액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

(아) 대상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된다고 하여, 그 위자료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부터 기산되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 한편 제1심판결에서 위와 같이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는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참조), 피고인 국가는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채무의 기산일을 늦추기 위하여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할 우려도 있고, 이는 원고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회복을 저해하게 된다.¹²⁾

(차)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¹³⁾이라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이행지체의 기준으로 보기 보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담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럽다.

(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국가의 의도적인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국가도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나면 이행청구를 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책임을 부담

12) 구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 6. 6. 제정) 제9조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국회(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의 포고 제4호에 의하여 해산)의 권한을 행사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제정된 인지 첨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 3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상소를 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며, 가집 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13)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는 것은 성질상 법원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부터 발생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72,207,7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저자서명 외료

[별지1]

별지

상속관계 및 청구금액

원고순번	피상속인	성명	희생자 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별	혼인시기 (입양시기)	사망시기 (사망한 경우)	고유위자료	1차상속 (성낙현 사망)		2차상속 (성갑출 사망)		3차상속 (이월희 사망)		4차상속 (도재옥 사망)		고유위자료 및 상속금액 합계 (원)	청구금액 (원)	비고
								상속분	상속액(원)	상속분	상속액(원)	상속분	상속액(원)	상속분	상속액(원)			
이 사건 희생																		
		성낙현	희생당사자	남				100,000,000										
		성도경	자	남				10,000,000										
		도재옥	처	여				50,000,000										
		성갑출	부(호주)	남				10,000,000										
		이월희	모	여				10,000,000										
1차 상속																		
희생자 성낙현 사망																		
		성도경	자	남		1950. 7. 말경~8.초순경			100,000,000									
									1/1	100,000,000								
2차 상속																		
부 성갑출 사망																		
		이월희	자	여		1960. 10. 20			10,000,000									
		성도경	손자	남					0.5/2.75	1,818,181								
		성낙현대습상속	성수락	자	여	1944. 4. 26			1.5/2.75	5,454,545								
			성순락	자	여	1944. 2. 17			0.25/2/75	909,090								
			성주연	자	여	1959. 10. 10			0.25/2/75	909,090								
3차 상속																		
모 이월희 사망																		
		성도경	손자	남		1983. 6. 13					1,818,181 + 10,000,000							
			성수락	자	여	1944. 4. 26					1/1.75	6,753,246						
			성순락	자	여	1944. 2. 17					0.25/1.75	1,688,311						
			성주연	자	여	1959. 10. 10					0.25/1.75	1,688,311						
4차 상속																		
처 도재옥 사망																		
		성도경	자	남		2015. 8. 9							50,000,000					
													1/1	50,000,000				
합계																		
1	성도경	희생자의 자						10,000,000	100,000,000		5,454,545	6,753,246		50,000,000	172,207,791	172,207,791	청구금액 합계	₩172,207,791

[별지2]

상속관계 법률규정

1.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

가. 개관

민법의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이하 '구 관습법'이라 한다),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제(弟)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모, 처, 딸이 존비(尊卑)의 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다. 호주 사망 후 무후가가 된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출가녀들이 균분상속하였다.

나.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적출 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 호주상속의 개시원인은 호주의 사망, 출가(분가호주가 입양으로 그 가를 떠날 때), 여호주의 가에 양자 입적, 여호주의 가에 남자 출생, 여호주의 출가 등이 있다.

○ 장남의 분가로 차남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장남이 호

주상속인이 된다.

○ 이성양자제도는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용인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다.

○ 호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 중자(衆子)는 분재 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즉 호주상속인은 일단 전호주의 재산을 독점 상속하였다가 가족인 제(弟)가 있는 때에는 일정할 비율로 분재를 하게 되는데 제의 분재청구권은 성혼 후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호주에게는 분가동의권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분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의 분재청구는 불가능하였다. 한편 여자에게는 분재청구권도 없었다.

○ 형망제급의 원칙은 父가 호주로서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弟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고, 그 형이 미혼인 때에는 호주상속 순위가 弟(연장자순)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다. 재산상속(가족사망 시)

1) 가족인 기혼남자의 상속인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양자 포함,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여자는 동일가적 내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 상속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 33619 판결 참조).

제2순위 - 亡男이 장남인 경우에는 父가, 亡男이 차남 이하인 경우에는 妻가 상속

제3순위 - 직계존속(亡 장남의 경우 제외): 最近親, 동순위자가 공동상속

제4순위 - 호주

2) 가족인 미혼의 남자 또는 여자의 상속인

제1순위 - 父, 없으면 母

제2순위 - 호주

3) 가족인 母의 상속인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비율로 공동상속(서출자녀는 반분,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제2순위 - 夫

제3순위 - 호주

4) 가족인 처의 상속인

가족인 처가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남녀가 동일가적 내의 유무를 막론하고 제1순위로 상속한다. 그 직계비속은 친생자는 물론 양자, 양녀 또는 서자녀도 포함한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本族(친가의 최근친)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이 亡夫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때에는 亡夫의 本族에게 상속한다.

5) 近親者 등에 권리귀속

①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호주상속인이 없어 絶家된 경우 또는 유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귀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귀속이다. ② 絶家된 망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③ 근친자도 없는 때에는 호주가 거주하던 里洞에 귀속한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판결). ④ 女戶主가 재혼하여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그 前婚家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혼가에서 태어난 出家女에 귀속하고(대법원 72. 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절가된 여호주의 최근친자가 수인의 출가녀만 있는 때에는 그 유산은 출가녀들의 공유로 한다.

2. 구 민법(1962. 12. 29. 법률 제12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구민법'이라 한다)

제984조(호주상속의 순위)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상속인의 처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동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 한다.

제990조(대습상속)

- ① 제984조제1호와 제9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② 제98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처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구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2구민법'이라 한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격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격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현행 민법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9조(법정상속분)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끝.

정본입니다.

202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열람용

법원주사보 권오영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신청 안내

- ※ 판결서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영업비밀 등이 적혀 있어 당사자 외 제3자가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 제163조).
- ※ 열람·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 후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 후 공개됩니다).

1. 신청자격: 민사·행정·특허 등 본안사건의 관계인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아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

2. 신청대상 판결서

민사·특허·행정 사건 등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의 판결서(다만,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되었거나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

3. 신청사유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4. 신청방법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
신청서] 접수(종이 또는 전자소송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열람용